

간추린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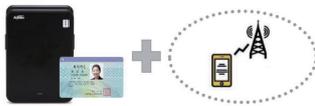


장애인·유공자 대상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확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장애인과 유공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지문인식 단말기를 탑재하고 지문을 인식한 후 통과해야 한다. 지문인식 방식은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시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사전에 동의하면 지문인식 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를 이용하여 할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2022.11)하였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전체 노선에서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6월 30일부터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퇴계, 용인~서울, 서울~문산 등 3개 노선이 추가되어 21개 노선 중 19개 노선에서 운영 중이다. 2023년 하반기에는 나머지 2개 민자 노선에도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추가하여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며,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에도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

▶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개요

기존	개선
지문인식 단말기 구매(영업소·온라인) → 지문 등록(행정복지센터) → 이용 전 지문 인증(차량 내) → 지문 재인식(4시간마다, 재시동 시)	지문인증 절차·방법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문인증 없이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 삽입 방식으로 개선
 <p>USB 케이블 감면(지문) 인식기 단말기 < 지문인증 방식 ></p>	 <p><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기 + 일반 하이패스 + 휴대폰 위치추적 ></p>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6.28.)

용어해설



도로구역·입체적 도로구역·도로보전입체구역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공공목적에 공용될 도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결정·고시(공용지정)한 부지구역을 의미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입체적 도로구역’은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관리청과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하여 도로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일정한 범위를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도로법」 제28조). 도로관리청이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입체적 도로구역 설정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도로관리청이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인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도로법」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지정해야 하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도로정책Brief의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도로정책Brief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도로정책Brief 원고를 모집합니다.

도로 및 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칼럼, 소식, 국내외 동향에 대한 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하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원고투고 및 주소변경 문의 : 044-960-0269

-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강현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 전화 | 044-960-0269 • 홈페이지 | www.krihs.re.kr

※ 도로정책Brief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교통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